

이 안내서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후속조치인 과태료 부과 업무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입니다. 동 안내서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,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는 경우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과태료 부과 업무 시, 당시 행정명령 발령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.

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

- 제9판 -

2023. 6. 1.



중앙방역대책본부

【주요 개정사항】

목차	구분	주요 개정사항
<p>II. 마스크 착용 명령 및 과태료 부과 기준</p>	<p>제8판</p>	<p>㉠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</p> <p>❶ 의무화 장소·시설·대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마스크 착용 의무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,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* * 실내란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■ 의료법(제3조)에 따른 의료기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(제외장소) 사무동·연구동·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(진료·검사·치료·수납 등)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(단,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) ○ 지역보건법(제31조)에 따른 보건소(보건의료원 포함), 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(제2조)에 따른 보건진료소 포함 ■ 약사법(제2조)에 따른 약국 <hr/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참고: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,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(코로나19 의심 증상) 인후통, 기침, 코막힘 또는 콧물,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,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(코로나19 고위험군) 65세 이상 연령층, 면역저하자,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(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) ④ 환기가 어려운 3밀(밀폐·밀집·밀접)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합성·합창·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
	<p>제9판</p>	<p>㉠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</p> <p>❶ 의무화 장소·시설·대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마스크 착용 의무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* * 실내란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

행정기관 참고용

목차	구분	주요 개정사항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의료법(제3조제2항제3호)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(제외장소) 사무동·연구동·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(진료·검사·치료·수납 등)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(단,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) ○ 지역보건법(제31조)에 따른 보건의료원* 포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보건의료원의 경우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■ <삭제> <hr style="border-top: 1px dotted black;"/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참고: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,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(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)했던 경우 ②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,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(코로나19 의심 증상) 인후통, 기침, 코막힘 또는 콧물, 발열 등 ③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,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(코로나19 고위험군) 65세 이상 연령층, 면역저하자, 기저질환자 등 ④ 환기가 어려운 3밀(밀폐·밀집·밀접)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·합창·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

목 차

I. 개요	1
1. 추진 배경	1
2. 법적 근거	1
3. 행정명령 관련	2
4. 참고 및 유의사항	2
II. 마스크 착용 명령 및 과태료 부과 기준	3
1.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	3
2.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시 과태료	6
3.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	8
III. 지도점검 및 단속절차	9
1. 지도점검 및 단속	9
2. 과태료 부과 상세 절차	9
IV. 협조사항	13
▷ 불임 ◁	
1.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	14
2.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: 마스크 착용	16
3.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주요 내용	18
4.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	20

I 개요

① 추진 배경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약칭: 감염병예방법, 이하 “법”으로 기재)」 개정(‘20.8.12 개정, 10.13 시행)에 따라 행정명령권자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으며,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

② 법적 근거

- 법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 제2호의2, 제2호의3, 제2호의4

감염병예방법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

①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,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2. (생략)

2의2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
2의3. 버스·열차·선박·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
2의4.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

- 법 제83조(과태료) 제2항, 제4항, 제5항 (개정 ‘20.8.12, 시행 ‘20.10.13)

감염병예방법 제83조(과태료)

① (생략)

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③ (생략)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

2.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, 관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부과·징수한다.

행정기관 참고용

③ 행정명령 관련

- (행정명령권자) 보건복지부장관,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

[참고] 감염병예방법 상위 조항의 “시·도지사” 등 약칭

제7조(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) (①~②항 생략) 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와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기본계획에 따라... (이하생략)

- (과태료부과권자)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
- (행정명령기간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감염병 위기 “경계” 이상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,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

④ 참고 및 유의사항

-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~제2호의4에 따른 대상자별 정의
 - (관리자) 시설·장소의 관리·총괄 책임자
 - (운영자) 시설·장소 설치자 또는 사업자
 - (이용자) 해당 시설·장소, 운송수단, 지역에 출입·방문한 모든 자*
 - * 관리자·운영자, 종사자 등을 포함
- “마스크 착용 의무” 행정명령 시 명확한 근거법령 명시 필요
 - 특정 장소·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로, 운송수단(대중교통)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3에 따른 방역지침의 일환임을 명시하여 발령 필요
 -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을 정하여 명령하는 경우는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로 발령 필요

①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

① 의무화 장소·시설·대상

○ (마스크 착용 의무)

-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*

* 실내란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

■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

* (제외장소) 사무동·기숙사 등 입소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(단,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)

1. 요양병원·장기요양기관

○ 의료법(제3조)에 따른 요양병원

○ 노인장기요양보험법(제2조)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 시설: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, 주야간보호기관, 단기보호기관

2. 정신건강증진시설

○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 "정신건강복지법"으로 기재)(제3조)에 따른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

* (제외시설) 폐쇄병동 보유기관 중 상급종합병원, 종합병원(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수가 전체 허가 병상 수의 100분의 50 미만), 국립정신병원

○ 정신건강복지법(제3조)에 따른 정신요양시설

○ 정신건강복지법(제3조)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 : 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, 지역사회전환시설, 중독자재활시설, 종합시설(입소시설)

* (제외시설) 정원 10인 이하 공동생활가정과 비입소시설(주간재활시설, 직업재활시설,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, 생상품판매시설, 종합시설(비입소시설))

3. 장애인복지시설

○ 장애인복지법(제58조)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 : 장애인 거주시설, 장애인 쉼터, 피해장애아동 쉼터

* (제외시설) 지역사회 재활시설, 직업재활시설, 의료재활시설, 생상품 판매시설

행정기관 참고용

■ 의료법(제3조제2항제3호)에 따른 **병원급 의료기관**

* (제외장소) 사무동·연구동·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(진료·검사·치료·수납 등)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(단,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)

○ 지역보건법(제31조)에 따른 **보건의료원*** 포함

* 보건의료원의 경우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

- 지자체별 의무착용 장소, 시간 및 기간을 추가 지정할 수 있음

○ (관리 의무)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에게 부과

-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 부과

★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

< 참고: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>

- ① **코로나19 확진자**이거나, **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**(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) 했던 경우
- ② **코로나19 의심 증상**이 있거나, **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** 경우
* (코로나19 의심 증상) 인후통, 기침, 코막힘 또는 콧물, 발열 등
- ③ **코로나19 고위험군**이거나, **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** 경우
* (코로나19 고위험군) 65세 이상 연령층, 면역저하자, 기저질환자 등
- ④ **환기가 어려운 3밀(밀폐·밀집·밀접) 실내 환경**에 있는 경우
- ⑤ **다수가 밀집한 상황**에서 함성·합창·대화 등 **비말 생성행위**가 많은 경우

※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

② 마스크 종류

-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‘의약외품’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(KF94, KF80 등), 비말차단용 마스크(KF-AD),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
 - ‘의약외품’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임
 - * 단, ‘의약외품’ 마스크 중에서도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
 - ** 식약처 권고사항(’20.8.28일): 들숨은 막고 날숨은 편하게 하는 밸브의 작동 원리와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 고려,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 (숨을 내 쉴 때(날숨)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수 있음)
- ‘의약외품’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·면 마스크, 일회용 마스크, 전자식 마스크*도 가능 함
 - *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
- 단,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, 넥워머,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

③ 착용법 관련

-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하는 것이 중요함
 -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
-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(nose wire)이 있는 마스크는 코편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틈이 없도록 착용

행정기관 참고용

②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시 과태료

① 대상별 과태료 금액

-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당사자(행정명령 위반 당사자): 위반 횟수와 관계 없이 각각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(법 제83조제4항)
- 의무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: 과태료의 부과기준*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(법 제83조제2항)

* 1차 위반 50만원, 2차 위반 100만원, 3차 이상 위반 200만원

※ <참고>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[별표 3] 과태료의 부과기준

② 상황별 과태료 부과(예시, 1차 위반 시)

순번	위반 내용	행정명령	운영자 (또는 관리자)	이용자
1	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및 운영자 운영·관리 소홀	마스크 착용 명령(제2호의4) 해당 시설 방역수칙 준수명령 (제2호의2)	과태료 50만원	과태료 10만원
2	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및 운영자 운영·관리 적합	마스크 착용 명령(제2호의4) 해당 시설 방역수칙 준수명령 (제2호의2)	과태료 부과 없음	과태료 10만원

<참고> 음식점 종사자의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해석례(법무부, '21.2월)

- (질의) 음식점 등의 관리자가 식품 제조 등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마스크를 착용시키지 않은 경우, 감염병예방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바, 이 때 당사자에게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수
- (해석)
 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관리자 등에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,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, 「식품위생법」이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식품의 제조·가공·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시키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,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,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임
 - 따라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과 「식품위생법」은 그 입법취지 및 목적이 서로 다르고, 방역당국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과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것은 그 위반행위의 태양 역시 상이하므로, 사안은 당사자가 법적근거가 다른 두 개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질서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각 근거법률에서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

③ 감경 또는 증액 관련 참고사항

- 법 시행령 [별표3] 에 따라 과태료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금액의 감경 또는 늘려 부과할 수 있음
- 또한,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등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음

행정기관 참고용

③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

○ (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자)

- 방역지침 취지 상 과태료 부과 예외인 경우

- 24개월 미만의 영유아
- 뇌병변·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
-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

- 과태료 부과 대상자이나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라 부과되지 않는 경우

•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

* (질서위반행위규제법) 제9조(책임연령)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○ (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) 세면, 음식 섭취, 의료행위,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

•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침실·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*과 있을 때

* 다인 침실·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·입소자, 상주간병인, 상주보호자

•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

• 음식·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와 사적인 공간에서 잠을 잘 때

• 수영장·목욕탕 등 물속·탕 안에 있을 때

• 세수,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

• 검진, 수술, 치료,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

• 얼굴을 보여야 하는 실내 공연(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), 방송 출연(촬영할 때로 한정,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) 및 수어통역을 할 때

• 임명식, 협약식,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사진 촬영(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,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) 할 때

• 운동선수, 악기 연주자가 실내에서 시합·경기 및 공연·경연을 할 때

•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(예: 응급 구조활동 등)

•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

• 원활한 공무수행(외교, 국방, 수사, 구조,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)을 위해 필요한 경우

III 지도점검 및 단속절차

- ① 지도점검 및 단속 ※ 각 장소·시설별 담당자가 지도·점검 및 단속 실시
- (지도·점검) 시도 및 시군구청 담당자는 지도·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·장소에 대해 지도·점검 실시
 - (단속) 위반행위 적발 시,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, 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
 - 단, 현장 단속 외 동일 업소(장소)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된 경우는 지도 없이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가능
- * 위반행위 적발 → 단속자 신분증 제시, 단속근거 설명 →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(요청) →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(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) → 과태료 부과통지 → 이의제기 안내(60일 이내)
- **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

② 과태료 부과 상세 절차

① 위반행위 적발

-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대상 시설·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, 마스크를 착용 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착용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

② 단속요원 신분소개 및 단속근거 설명

- 위반자에게 공무원증을 제시하여 정당한 공무집행 중임을 안내
- 단속 근거를 설명하여 적법절차 준수 및 단속의 정당성 확보

행정기관 참고용

③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,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(사전통지서 추후 발송)

- 위반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, 인적사항(이름, 주민등록번호) 확인
- 지속적으로 신분증 제시 및 인적사항 요청에 불응하며, 단속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 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에 지원 요청(112 신고)
 - * 지역 내 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와 사전 협의 필요
- 위반행위 확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과 의견제출 기간(10일 이상) 내에 자진 납부 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20/100 범위에서 감경됨을 안내

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】

제18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.

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.

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】

제3조(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) ④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(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하여야 한다.

1. 당사자의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과 주소
2.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,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
3.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
4.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
5.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다는 사실(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)
6.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(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)
7.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제5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.

<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에 따른 의견 제출 방법 및 후속조치 >

1. 처분 당사자는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,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음
2.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함
3.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된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
4.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

④ 과태료 부과 통지

- 의견제출 기간이 지난 후 최종 확정된 과태료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통지
- 납부기한은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함
- 과태료 처분 통지는 당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, 우편에 의한 송달이 불가능할 때에는 공시 송달

※ 처분통지서의 수령 여부는 우체국 홈페이지(<http://epost.go.kr>)에서 등기번호로 확인

-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공보 또는 일반신문에 게재*

*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, 공시송달기간(14일)이 경과한 후 이의제기 없이 다시 60일이 경과하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

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】

제2조의2(과태료 감경)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3. 5. 10., 2018. 12. 31.>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
 2. 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·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
 3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 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
 5. 미성년자
- ②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.

제4조(과태료 부과 고지서)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(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하여야 한다.

1. 당사자의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과 주소
2.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,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
3.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
4. 과태료 납부 기한, 납부 방법 및 수납 기관
5.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 각 목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요건
 - 가.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
 - 나.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
 - 다.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
 - 라.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(監置)
 - 마. 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
6.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관과 방법
7.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행정기관 참고용

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시 후속조치

-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가능
 - ※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은 효력 상실
- 과태료 부과권자는 이의제기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용하지 않는 경우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, 이의제기 당사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
-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타당하여 수용하는 경우, 당사자에게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타당하다는 내용과 과태료 부과처분이 효력이 없다는 내용 및 관할 법원에 통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당사자에게 통보
 - ※ 이의제기자는 과태료 사건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행정청으로부터 통지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음

IV

협조사항

- (협조사항) 지자체별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
 - ①근거 법령, ②시설·장소·대상, ③마스크 종류, ④올바른 착용법, ⑤시행일을 포함하여 행정명령 재발령 필요

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3] <개정 2022. 2. 9.>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33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다.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이하 "부과권자"라 한다)은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- 1)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·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
 - 2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- 3)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이 법에 따른 제재 처분을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과태료·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
 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라.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8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- 1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- 2)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3)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
 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행정기관 참고용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(단위: 만원)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아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83조 제2항	50	100	200
자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이용자나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83조제4항제1호	10	10	
차.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83조 제4항제2호	10	10	

1 마스크 착용

< 개인방역 보조수칙 : 마스크 착용 >

① 마스크 착용 일반 원칙

- 마스크 착용, 손 씻기, 사람 간의 거리 두기 등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며 중요합니다.
-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
-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'의약외품'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합니다.
 - '의약외품 마스크'가 없을 경우 면(천) 마스크, 일회용 마스크 착용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
②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법

- 개인의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선택하여 호흡기인 입과 코를 완전히 덮도록 얼굴에 잘 밀착해 착용합니다.
-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(nose wire)이 있는 마스크는 코편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틈이 없도록 합니다.
- 마스크 내부에 마스크 가드,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- 마스크 자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만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.
- 마스크 착용 시에는 손을 통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습니다. 만졌다면,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.
- 마스크를 잠시 벗어야 하면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한 봉투에 보관하고, 마스크를 줄에 걸어 목걸이로 사용할 경우 마스크 안쪽 면이 오염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쪽 면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
- 환기가 어렵고 사람이 많아 비말감염의 우려가 있는 밀폐·밀집·밀접(3밀) 시설에서 사용한 마스크는 교체하는 것을 권고합니다.
 - 땀이나 물에 젖은 마스크는 세균번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새 마스크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.
 -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곤란, 어지러움, 두통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개별 공간 또는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가 가능한 야외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휴식을 취한 후 증상이 완화되면 다시 착용합니다.
- 마스크 사용 후에는 마스크 앞면에 손을 대지 않고 귀에 거는 끈만 이용해 벗은 후 바깥면을 안쪽으로 접어 끈으로 감고 가능하면 소독제를 뿌린 후 종량제 봉투에 버립니다.

행정기관 참고용

③ 마스크 착용 의무·권고 상황 및 상황별 권고 마스크

<마스크 착용 의무·권고 상황>

-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.
-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.

<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>

- ① 코로나19 **확진자**이거나, 코로나19 **확진자와 접촉**(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)했던 경우
- ② 코로나19 **의심 증상**이 있거나, 코로나19 **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**하는 경우
* (코로나19 의심 증상) 인후통, 기침, 코막힘 또는 콧물, 발열 등
- ③ 코로나19 **고위험군**이거나, 코로나19 **고위험군과 접촉**하는 경우
* (코로나19 고위험군) 65세 이상 연령층, 면역저하자, 기저질환자 등
- ④ **환기가 어려운 3밀(밀폐·밀집·밀접) 실내 환경**에 있는 경우
- ⑤ **다수가 밀집한 상황**에서 함성·합창·대화 등 **비말 생성행위**가 많은 경우

- 코로나19 확진자가 불가피하게 외출할 때에는 KF94(또는 이하 등급) 마스크를 권장합니다.
- 고위험군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, 또는 감염 위험시설(3밀)·취약시설(요양병원 등)에서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권장합니다.

<상황별 권고 마스크>

상황		보건용 마스크		수술용 마스크	비말차단용 마스크
		KF 94	KF 80		
의료 관련 상황	·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경우	필수		-	
	·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	(우선 권장)		사용가능	
	· 코로나19 의심증상자이거나 의심증상자와 접촉할 때 ·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할 때	(우선) 권장		사용 가능	
생활 방역 상황	·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· 환기 어려운 3밀(밀폐·밀집·밀접) 환경인 경우	(우선) 권장		사용 가능	
	· 다수가 밀집해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			권장	

④ 마스크 착용 예외 가능 상황(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해당)

-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침실·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(다인 침실·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·입소자, 상주간병인, 상주보호자)과 함께 있거나,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
※ 단, 코로나19 확진자 및 확진자의 동거인은 전파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권고
※ 발열·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서 고위험군(65세 이상, 기저질환자, 임신부 등)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
- 음식 섭취, 수영·목욕, 세수·양치, 검진 등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

⑤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는 대상(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상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에 해당)

- ① 24개월 미만의 영유아, ② 뇌병변·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, ③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
※ 단, 아동 간 발달 정도를 고려하여, 24개월 이상이라도 부모·보호자의 세심한 관찰·감독이 필요
※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예외상황 등 자세한 내용은 “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” 참조

<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>

○ 법적근거,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관련

- (법적근거) 감염병예방법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, 제83조(과태료)
- (행정명령기간)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“경계·심각”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(보건복지부장관,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)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
- (과태료 부과) 계도기간 1개월('20.10.13.~'20.11.12.) 후 2020년 11월 13일부터 부과
※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,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
- (과태료 금액)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, 관리·운영자 300만원 이하(1차 50만원, 2차 100만원, 3차 이상 200만원)

○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·대상

- (착용 의무) 감염취약시설* 중 입소형 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
* 감염취약시설 : 요양병원·장기요양기관, 정신건강증진시설, 장애인복지시설
- (관리 의무) 의무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는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침 게시 및 안내 의무
- ★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

<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>

- ①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,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(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)했던 경우
- ②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,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
* (코로나19 의심 증상) 인후통, 기침, 코막힘 또는 콧물, 발열 등
- ③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,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
* (코로나19 고위험군) 65세 이상 연령층, 면역저하자, 기저질환자 등
- ④ 환기가 어려운 3밀(밀폐·밀집·밀접)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
-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·합창·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

※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

○ 마스크의 종류 및 착용법

- (마스크 종류) 식약처에서 ‘의약외품’ 으로 허가 받은 보건용 마스크(KF94, KF80 등), 비말차단용 마스크(KF-AD), 수술용 마스크 강력 권고 그 외 천면 마스크, 일회용 마스크, 전자식 마스크 가능
*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
※ 망사형 또는 벨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, 넥워머,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
- (착용법)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
*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

행정기관 참고용

○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

<p>예외 대상자</p>	<p>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취지 상 과태료 부과 예외</p> <p>과태료 부과 대상이나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부과되지 않음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4개월 미만인 영유아 • 뇌병변·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•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•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* (질서위반행위규제법) 제9조(책임연령)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
<p>예외 상황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침실·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*과 있을 때 * 다인 침실·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·입소자, 상주간병인, 상주보호자 •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• 세수,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• 음식·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와 사적인 공간에서 잠을 잘 때 • 수영장·목욕탕 등 물속·탕 안에 있을 때 • 검진, 수술, 치료,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•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• 얼굴을 보여야 하는 실내 공연(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), 방송 출연(촬영할 때로 한정,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) 및 수어통역을 할 때 • 임명식, 협약식,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사진 촬영(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,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) 할 때 • 운동선수, 악기 연주자가 실내에서 시합·경기 및 공연·경연을 할 때 •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(예: 응급 구조활동 등) • 원활한 공무수행(외교, 국방, 수사, 구조,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)을 위해 필요한 경우 	



KF94 마스크 ·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돌보는 경우

KF80이상 마스크

- 기침, 목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
- 건강취약계층^①과 기저질환자^②가 다른사람과 접촉하는 경우

비말차단용·수술용 마스크

- 장시간 착용해야 하는 환경·더운 여름철·호흡이 불편한 경우에 사용이 편리

① 건강취약계층 노인, 어린이, 임산부, 만성질환자 등

② 기저질환자 만성 폐질환, 당뇨, 만성 신질환, 만성 간질환, 만성 심혈관질환, 혈액암, 항암치료암환자,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

· 미세입자 차단

호흡 용이성 →



마스크 착용 전
깨끗이 손 씻기



입과 코를 가리고,
틈이 없도록 착용



착용중 마스크 만지지 않기
만진 후 깨끗이 손씻기



입만 가리는 착용



턱에 걸치는 착용



겉을 만지는 행위



코만 가리는 착용

- 카페나 음식점에서 음식 섭취 전·후나 대화 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
- 잠시 마스크를 벗어야 하면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한 봉투에 보관합니다



마스크 선택법

식약처가 허가한 **의약품**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

마스크 폐기법



마스크는 귀에 거는 끈만 이용해 벗은 후 **바깥면을 안쪽으로 접어** 끈으로 감고 **소독제를 뿌려** 종량제 봉투에 버립니다

※ 소독제가 없는 경우 비닐봉지에 넣어 쓰레기봉투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합니다